

<h1 style="text-align: center;">대학평의원회 회의록</h1> <h2 style="text-align: center;">(2021-1차)</h2>		결 재	계	팀 장	처 장	총 장
			(전)	(자)	(결)	(재)
일 시	2021년 3월 2일(화요일) 17:00 ~		장 소	대학본부동 2층 회의실		
토의내용 요 지 및 심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처장: 오늘 회의 안건은 대학평의원회 의장, 부의장 선출 및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전주교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입니다. 임시 의장을 맡아주실 위원님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자이신 000 교수님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전체위원: 동의합니다. ○ 교무처장: <퇴장> ○ 임시의장: 의장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평의원: 호선으로 했으면 합니다. ○ 전체위원: 동의합니다. ○ 평의원: 현재 우리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000 위원님을 의장으로 추천합니다. ○ 평의원: 제청합니다. 000 교수님은 교육행정을 전공하셨고, 학생처장을 역임 하셨으며, 교수로서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000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의장: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거수 결과 만장일치로 000 위원님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의장: 모든 집단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평의원회가 우리 대학교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도 추천에 의해 선출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체위원: 동의합니다. ○ 의장: 부의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의원: 부의장은 직원 위원 중에 선출하였으면 합니다. ○ 전체위원: 동의합니다. ○ 평의원: 000 위원을 추천합니다. ○ 평의원: 제청합니다. ○ 평의원: 000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평의원: 저는 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000 위원 추천에 대해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 의장: 거수 결과 만장일치로 000 위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부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p><안건상정></p>					

□ 안건: 전주교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1. 개정사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신설('20.6.11.)로 입학취소 대상이 되는 입학 부정행위의 기준이 법령상 구체화됨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고등교육법인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이며, 구성원들에게 일주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의원: 학생회 임원들과 회의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제18조의2에 입학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의장: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평의원: 현행이 더 포괄적이어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개정안에는 정해진 항목 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평의원: 제18조의2 3항에 보면 일일이 부정행위를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예시에 나온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만든 예시인 것 같습니다. 000 위원님 의견처럼 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포괄될 것 같습니다.

- 평의원: 학교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 의장: 네

- 평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의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은 입시의 공정성입니다. 개정안 3호에 보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그 밖의 것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행 제18조의 2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어디에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까? 2호에 대한 부분은 개정안에 반영이 되지 않고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의원: 학칙 제19조에 입학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방금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학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평의원: 안건을 제출했으면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무처(000 주무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 예시 안을 학칙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제18조의 2의 내용은 학칙에 이미 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000 위원님 의견처럼 제19조에서 입학절차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18조 2호는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 평의원: 심의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사유를 자세히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다음 회의부터는 개정안에 대해 해당 부서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p>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 안전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전체위원: 없습니다. ○ 의장: 전주교육대학교 학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장: 이상으로 대학평의원회(2021-1차) 폐회를 선언함 		
의결사항	<input type="checkbox"/> 대학평의원회 의장, 부의장 선출: <u>의장 000, 부의장 000</u> <input type="checkbox"/> 전주교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u>“원안가결”</u>		
참석자 현 황	참석대상자	13명	
	참 석 자	12명	
	불 참 자	1명	
작성자	소속: 교무처	직급:	성명: